

<p> [위치 : 구로구 가리봉동 535 일대 면적 : 6,483㎡→0 [위치 : 광명시 철산동 322 일대 면적 : 7,183㎡→0 ○지역현황 • 한국수출산업공단내에 소재하며, 다음 시설로 이용중임. [가리봉동 535일대→녹지대 조성(주차장 및 소공원) [광명시 철산동 322 일대→자동차운전학원 •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연결하여 유수지시설이 설치되어 공단내 우·오수 배제 • 토지소유자 : 한국수출산업공단 4. 검토의견 ○본 구로구 가리봉동 535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'76.9.24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와 동시에 시설 결정되었으나,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시설지역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만들고, 또 자동차학 </p>	<p> 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, ○'90.4.26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4조(공단용지의 용도별 구획등)에 의거 공공시설구역(수질오염 방지시설)에서 공장 시설구역으로 구획변경 고시됨에 따라 ○현재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임. ○본 의견청취의 건은 법률에 의해서 공장 시설구역으로 구획변경되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유지는 불요하다 하더라도, 이 공단지역의 하수처리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처리 의견임. 5. 심사결과 보 류 ----- 도시계획(구역)변경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건 의안 번호 922 제출년월일 : 1993.1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 </p>																
1. 개 요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기 정</th> <th colspan="2">변 경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구 역</th> <th>면 적(km²)</th> <th>구 역</th> <th>면 적(km²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서울 도시 계획 구역</td> <td>서울특별시, 경기 도 광명시·고양시 · 구리시·남양주 군 각 일부 지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65,984</td> <td>서울특별시, 경기 도 광명시 일부 지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6,23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◀구역분리▶ ○원능 도시계획 구역 53,949km² ○구리 도시계획 구역 5.8km²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기 정		변 경		비 고	구 역	면 적(km ²)	구 역	면 적(km ²)	서울 도시 계획 구역	서울특별시, 경기 도 광명시·고양시 · 구리시·남양주 군 각 일부 지역	665,984	서울특별시, 경기 도 광명시 일부 지역	606,235	◀구역분리▶ ○원능 도시계획 구역 53,949km ² ○구리 도시계획 구역 5.8km ²
구분	기 정		변 경		비 고												
	구 역	면 적(km ²)	구 역	면 적(km ²)													
서울 도시 계획 구역	서울특별시, 경기 도 광명시·고양시 · 구리시·남양주 군 각 일부 지역	665,984	서울특별시, 경기 도 광명시 일부 지역	606,235	◀구역분리▶ ○원능 도시계획 구역 53,949km ² ○구리 도시계획 구역 5.8km ²												
2. 상정사유 ○'63.9.17 서울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관리되어 온 경기도 고양시·구리시·남양주군 일부 행정구역이 시승격 등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독립된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분리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구역을 변경(분리)코자 함.	3. 참고사항 ○도시계획사항 : 도시계획 용도지역-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,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-공원, 도로, 학교, 철도, 하수시설, 자동차정류장 등 ○공람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의견없음.																

<p>○용도지역 변경결정 결정권자: 시장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961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제출년월일: 94. 1. 26</td> <td style="width: 40%;">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</td> </tr> </table> <p>1. 개요</p> <p>○위 치: 서초구 원지동 23 일대</p> <p>○규 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폐기물처리시설 결정: A=14,639㎡ -진입도로 결정: B=15m, L=110m -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: A=359,843.7→359,315.7㎡(감 528㎡) <p>○도시계획 상황: 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, (일부)유통업무설비</p> <p>2. 상정 사유</p> <p>○쓰레기매립장이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장으로 이전되어 쓰레기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,</p> <p>○쓰레기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수송을 위한 쓰레기중간집하장 및 압축시설과 청소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함.</p> <p>3. 참고사항</p> <p>○공람공고시 주민의견: 7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견요약: 교통체증 가중 및 주변자연환경 저해가 우려되므로 반대-미반영 <p>○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입안내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시 설 명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위 치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면 적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고덕제7근린공원</td> <td>강동구 고덕동 215 일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9,599.9㎡</td> <td>기존공원면적 증감없이 위치만 조정(조정면적: 603.1㎡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4. 참고사항</p> <p>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, 공원</p> <p>○공람공고 중 주민의견 접수: 없음</p>	의안 번호	961	제출년월일: 94. 1. 26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	고덕제7근린공원	강동구 고덕동 215 일대	99,599.9㎡	기존공원면적 증감없이 위치만 조정(조정면적: 603.1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압축기 및 파쇄기 설치 • 청소차고 및 차량정비시설 • 방진·오수정화시설 등 •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처리용량: 113톤/1일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※서초구 쓰레기 발생·처리 현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left: 2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구직영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처리: 113톤(23%)</td> <td style="width: 70%;">-본시설에서 처리 예정</td> </tr> <tr> <td>대행업체</td> <td>처리: 371톤(77%)</td> <td>-대행업체 자체 집하장에서 처리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94예산확보: 60억(부지매입비) <hr/> <p>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972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제출년월일: 94. 1. 21</td> <td style="width: 40%;">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강동구 고덕동 215 일대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고덕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고덕제7근린공원 내부에 기존 건물(대양교회 및 부속건물)이 존치되어 있어 공원기능에 지장이 있고 -공원내 교회건물은 진입도로가 없어 층·개축이 곤란한 점 등 불편요인이 많아 -공원내 기존건물 지역을 공원의곽으로 위치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임. <p>○협의부서(공원과)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와 대체 지정되는 토지의 상호교환에 대한 검토 	구직영	처리: 113톤(23%)	-본시설에서 처리 예정	대행업체	처리: 371톤(77%)	-대행업체 자체 집하장에서 처리	의안 번호	972	제출년월일: 94. 1. 21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의안 번호	961	제출년월일: 94. 1. 26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																				
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																				
고덕제7근린공원	강동구 고덕동 215 일대	99,599.9㎡	기존공원면적 증감없이 위치만 조정(조정면적: 603.1㎡)																				
구직영	처리: 113톤(23%)	-본시설에서 처리 예정																					
대행업체	처리: 371톤(77%)	-대행업체 자체 집하장에서 처리																					
의안 번호	972	제출년월일: 94. 1. 21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																				